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24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p>(신설)</p>	<p>제24조(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p>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p style="text-align: right;">'93. 7. 8. 총무제무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사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93. 6. 14.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93. 6. 28. 다. 상정일자: 제17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3. 7. 8)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세무1과장 최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안이유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증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확대 적용코자 함. 나. 주요골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세면제대상을 “상이군경”에서 “국가유공자증 상이를 입은자”로 확대개정(안 제1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자동차 면허세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에서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로 개정(안 제2조제2항) ③ 자동차면허세 면제대상에서 상이급수 “2급내지 5급”의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의 적용을 “3급내지 5급”으로 개정(안 제2조제2항단서) ④ 과세면제 신청시 “상이등급 증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에서 “상이등급 신청서를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로 개정(안 제3조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증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상이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시책을 강구하려는 취지로서 특이사항 없음.
--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운동현위원) : 과세면제되고 있는 상이자를 토지, 건물, 자동차순으로 답변바람.

답변요지(최영명 세무1과장) : 토지, 건물은 집단자활촌에 거주하는 경우에 면제되므로 우리구에는 해당이 없고 자동차의 경우 2000cc이하 자동차 소유자 44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면제대상 인원은 현재 202명이고 본조례가 시행되면 26명이 증가되어 228명이 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1
----------	-----

제출년월일 : 1993년 7월 8일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확대 적용코자 함.

2. 개정주요골자

가. 과세면제대상을 "상이군경"에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확대개정(안2 제1조)

나. 자동차 면허세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에서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로 개정(안, 제2조2제2항 본문)

다. 자동차면허세 면제대상에서 상이등급 "2급내지 5급"의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의 적용을 "3급내지 5급"으로 개정(안, 제2조제2항 단서)

라. 과세면제신청시 "상이등급 증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에서 "상이등급 신청서를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로 개정(안, 제3조제1항)

3. 개정근거

가. 지방세법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다. 세정13415-539('93. 5. 20)호, 세정13415-578('93. 5. 25)호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관련근거법규 :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등급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하고, "이하같다)이"를"이하같다)가"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급 수		분 류 번 호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 급		108, 109, 111, 112, 113, 504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 급 (복합호수자)	1 항	35, 36, 47, 48, 115, 115,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 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1조(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 집 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예우등 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 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목적) 국가유공자중 상이물 입은 자</p>
<p>제2조(면제대상)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 경의 경우는 동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cc이하로 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p>	<p>제2조(면제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는..... (이하 같다)가</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3조(면제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등급별 증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p> <p>① (생략)</p>	<p>제3조(면제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고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별표>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급 수</th> <th>분 류 번 호</th> </tr> </thead> <tbody> <tr> <td>2 급</td> <td>14, 79, 98, 99, 102, 104, 105</td> </tr> <tr> <td>3 급</td> <td>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td> </tr> <tr> <td>4 급</td> <td>108, 109, 111, 112, 113, 504</td> </tr> <tr> <td>5 급</td> <td>25, 26, 28, 29, 41, 73, 77, 92, 505</td> </tr> <tr> <td>6 급 1 항 (복합호수자)</td> <td>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td> </tr> <tr> <td>6 급 2 항 (복합호수자)</td> <td>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7, 69, 70, 74, 75, 88</td> </tr> <tr> <td>비 고</td> <td>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2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td> </tr> </tbody> </table>	급 수	분 류 번 호	2 급	14, 79, 98, 99, 102, 104, 105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 급	108, 109, 111, 112, 113, 504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 급 1 항 (복합호수자)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6 급 2 항 (복합호수자)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2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p><별표>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급 수</th> <th>분 류 번 호</th> </tr> </thead> <tbody> <tr> <td>삭 제</td> <td>삭 제</td> </tr> <tr> <td>3 급</td> <td>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td> </tr> <tr> <td>4 급</td> <td>108, 109, 111, 112, 113, 504</td> </tr> <tr> <td>5 급</td> <td>25, 26, 28, 29, 41, 73, 77, 92, 505</td> </tr> <tr> <td>6 급 1 항 (복합호수자)</td> <td>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td> </tr> <tr> <td>6 급 2 항 (복합호수자)</td> <td>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td> </tr> <tr> <td>비 고</td> <td>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td> </tr> </tbody> </table>	급 수	분 류 번 호	삭 제	삭 제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 급	108, 109, 111, 112, 113, 504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 급 1 항 (복합호수자)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6 급 2 항 (복합호수자)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급 수	분 류 번 호																																
2 급	14, 79, 98, 99, 102, 104, 105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 급	108, 109, 111, 112, 113, 504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 급 1 항 (복합호수자)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6 급 2 항 (복합호수자)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2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급 수	분 류 번 호																																
삭 제	삭 제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 급	108, 109, 111, 112, 113, 504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 급 1 항 (복합호수자)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6 급 2 항 (복합호수자)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